

# 재단법인 순천대학교발전지원재단 정관

제정 1994. 3. 15. 개정 2010. 12. 6.  
개정 2013. 12. 10. 개정 2015. 10. 23.  
개정 2016. 5. 12. 개정 2018. 9. 7.  
개정 2019. 2. 26. 개정 2019. 5. 29.  
개정 2019. 7. 4. 개정 2020. 3. 2.  
개정 2021. 10. 1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순천대학교발전지원재단”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매곡동 315)번지 순천대학교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2. 교수 연구년제 지원
3. 장학사업 지원
4. 국제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사업 지원
5. 시설확충 사업 지원
6. 대학문화 사업 및 후생복지 사업 지원
7. 그 밖에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한다.

1.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 수익사업
2.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
3. 국채·공채의 매입·매각에 의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제5조(법인공익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순천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에 한한다.

##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외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6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당연직 이사인 기획

처장을 상임이사로 둔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의 임원 선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천대학교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어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지체없이 이사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과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와 의사는 출석이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와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와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과 명시하여 각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3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 ① 재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6장 보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그 밖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의 인정된 사항

제38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3과 같다.

부칙(1994. 3. 15.)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1호는 현재 재임중인 임명직 임원(감사 제외)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부칙(2013. 12. 1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1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 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2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1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設立當初의 基本財産

(1993. 12. 1. 現在)

財産名	數量	額面金額	評價金額	備考
動産		400,000,000원	400,000,000원	學術基金
動産		410,000,000원	410,000,000원	獎學基金
計		810,000,000원	810,000,000원	

「별지 2」

현재의 基本재산

(2021. 2. 25. 현재)

재산명	종목	액면금액	평가금액	비고
동산	예금	4,259,863,024원	4,259,863,024원	학술기금
	예금	5,977,274,114원	5,977,274,114원	장학기금
	보험	3,000,000,000원	3,000,000,000원	
계		13,237,137,138원	13,237,137,138원	



「별지 3」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職 位	姓 名	住 所	任 期
이사장	金晉鎬	순천시 용당동 삼산현대아파트 108동 904호	4 년
이 사	金成洵	순천시 옥천동 현대아파트 A동 303호	4 년
이 사	安桂洙	순천시 인제동 106-5번지	4 년
이 사	梁承烈	순천시 영동 84번지	4 년
이 사	池榮洙	광주시 계림동 178-52번지	2 년
이 사	姜永漆	순천시 남내동 100-2번지	2 년
이 사	金大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2-2 청화A 6동 1003호	2 년
이 사	金性才	순천시 매곡동 136번지	2 년
이 사	金昌垠	순천시 행동 48번지	2 년
이 사	朴寬洙	순천시 남내동 35번지	2 년
이 사	孫純鍾	순천시 연향동 동부아파트 106동 505호	4 년
이 사	安世燦	순천시 가곡동 244-2번지	2 년
이 사	吳永基	순천시 석현동 향림현대아파트 101동 804호	2 년
이 사	趙禎九	순천시 저전동 235-21번지	4 년
이 사	許祥萬	순천시 저전동 235-30번지	4 년
이 사	許英男	여수시 공화동 715-2번지	4 년
이 사	黃義彬	순천시 풍덕동 한신아파트 4동 903호	2 년
감 사	金勇烈	순천시 매곡동 218-4번지	1 년
감 사	張永仁	순천시 용당동 삼산현대아파트 105동 1304호	2 년